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2 선고 2020가합56705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

담당변호사 김승리

피 고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

담당변호사 소현민

변 론 종 결 2021. 10. 15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2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들에게, 피고 C는 150,000,000원 및 위 돈 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4. 2. 17.부터,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4. 3. 1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피고 D은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9. 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당사자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원고들은 E에게 1,500,000달러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, E의 요청에 따라 E의 지인인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인 각 1억 5,000만 원을 지급하고, 피고들이 이를 E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.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1억 5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 이후 원고 B은 미국 법원에 E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E은 위 소송에서 피고들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1억 5,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 주장의 요지

- 1) 피고 C는 원고 A으로부터 5,000만 원을 음식점 대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, 4,900만 원을 돌려주었고, 원고 A으로부터 1억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.
- 2) 피고 D은 원고 A으로부터 1억 5,000만 원을 E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, E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바 없다.

3) 원고 B이 미국 법원에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들의 대여금 중 5,000만 원은 피고 C를 통해서, 1억 5,000만 원은 피고 D를 통해서 E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되었으므로,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,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 사실

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3에서 6, 13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- 1) 원고들은 부부이고, 원고들의 딸인 F은 2012. 7.경 E과 결혼하였다가 이후 이혼하였다.
- 2) 원고들은 2013년 초경 F과 E을 보러 미국을 방문하였는데, E은 당시 원고들로부터 15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.
- 3) 이에 따라 원고들은 E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는데, 2014. 2. 17.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인 5,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고, 피고 C는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. 또한 원고들은 2014. 9. 16. 피고 D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인 1억 5,000만 원을 지급하였고, 피고 D은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.
- 4) 원고 B은 미국 법원1) 에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8. 21. E이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들을 통해 지급받은 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707,190,884.12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1) 5,000만 원 부분

가)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C에게 5,0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C를 통해 E에게 대여금으로 위 5,000만 원을 전달하고자 하였고, 피고 C는 원고들의 의도대로 E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.

나) 따라서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5,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5,000만 원의

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1억 원 부분

원고들이 피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(G의 사실확인서)의 기재는 ①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전달하면서 그에 관한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, ② 피고 D에게 1억 5,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D으로부터는 수령증을 받은 점, ③ 원고들이 운전기사로 고용한 G은 원고들의 지시를 받는 자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1억 원의 부당이득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.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D에게 1억 5,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D를 통해 E에게 대여금으로 위 1억 5,000만 원을 전달하고자 하였고, 피고 D은 원고들의 의도대로 E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.

2) 따라서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억 5,000만의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1억 5,000만 원의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허명산, 판사 심현근, 판사 정신영

1)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